

제161회 거창군의회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9 ~ 33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2009 ~ 34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09 ~ 35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1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33
----------	-----------

제출연월일	2009. 9.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

나. 현행 26개 조항의 조례를 6장 26개 조항의 체계로 하여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체육시설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보칙(안 제25조, 제26조)으로 구분함.

다. 조례의 목적을 일부 보완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보완·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여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라.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원화하되,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5시에 조기개장토록 함(안 제6조).

마.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용 또는 연습목적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같음토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7조).

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11조 및 별표).

○ 전용사용료, 이용(연습)료, 입장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등 6가지 유형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종전의 사용료 규정을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종합운동장(천연잔디)과 보조경기장(인조잔디), 실내체육관 3개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변경함

-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 중 종합운동장(천연잔디)과 보조경기장(인조잔디)의 사용료를 1일 1회 3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신설함
-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전액 면제 대상과 100분의 30 경감 대상으로 세분화하고, 국가유공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함(안 제15조).

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대상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와 일부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하되, 사용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미사용 신고 시기에 따른 기 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16조).

자.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와 위탁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차. 그 밖에 사용료 개정에 따른 적용례, 사용허가 및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2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0조, 제1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행정대집행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8. 11. ~ 2009. 8.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 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상설 스포츠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 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10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전람·전시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개방 및 이용

-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및 운영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위탁

-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 ①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 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 육 경 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 육 경 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실내체육관		체 육 경 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50,000	120,000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34
----------	-----------

제출연월일	2009. 9.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이 '06.1.1부터 전면개정(법률 제7297호, '04.12.3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자연경관 보전 및 청정환경에 대한 군민적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자연경관 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개정 시행('06.1.1)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조례의 해당조문	현행	개정	비고
제1조(목적)	법 제44조 및 제45조	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의 보전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10조(자연 경관의 적정 관리)	조례 제7조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자연경관 검토기준
	법 제44조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 나. “자연경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추가하고, 종전의 용어 (“자연경관 보전”, “자연경관 보전지역”,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여 ‘호’의 순서를 이동함(안 제2조).

다. 현행 조례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입목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 삭제, 안 제10조).

라. 현행 조례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각각의 조문 순서를 바꾸어 해당 내용에 맞게 문맥 등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삭제, 안 제12조).

마.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 위원의 인원을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는 등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군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관위주의 인적구성을 탈피, 민간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도로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7. 27. ~ 2009. 8. 21.) 결과 : 별첨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함 께 하 는 거 창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 부위원장은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민간 참여를 적극 보장 운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반영
	⑤ 위원은 자연경관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위촉하며, 산림환경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규칙 개정 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반영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임된”을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부터 제4호(중전의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치를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근지역간”을 “인근지역 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물 설치등”을 “건축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을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등”을 “도로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등”을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위원회”를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로, “이를”을 “그 내용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를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활용하고자 하는”을 “활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는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을 “하는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를 “제1항의 검토결과”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되면”으로, “사업자”를 “해당 개발 사업 신청자”로, “권고, 조언”을 “권고하거나 조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를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를 “주요 도로변 가시 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연경관 보전활동상”을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로, “각호”를 “각 호”로,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그 지정”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절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 군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p> <p>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p> <p>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형질 변경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3.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치를 말한다.</p> <p>2. "자연경관 보전"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3.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p> <p>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p> <p>① 자연경관은 다음 <u>각호</u>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해당지역 또는 <u>인근지역간의</u>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p> <p>4. <u>건축물 설치등</u>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p> <p>5. <u>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u> 형질변경 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p> <p>② (생 략)</p> <p>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u>도로등의</u>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p> <p>① ----- <u>각 호</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인근지역 간</u>----- -----</p> <p>4. <u>건축물 설치 등</u> ----- ----- -----</p> <p>5. <u>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u> 형질변경 허가(개발행위) 등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도로 등</u>----- -----.</p>
<p>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가. ~ 나. (생 략)</p> <p>다. <u>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등</u>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p> <p>3. ~ 5. (생 략)</p> <p>6. <u>기타</u>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u> ----- -- <u>각 호</u>-----.</p> <p>1. ~ 2.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현 행	개 정 안
<p>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 제1항에 따른 -----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 ----- ----- ----- -----.</p> <p>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 그 내용을 ----- -----.</p>
<p>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 ----- 각 호-----.</p>

현행	개정안
<p>1. (생략) 가. ~ 라. (생략) 마. <u>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u></p> <p>2. (생략) 가. ~ 마. (생략)</p> <p>3. (생략) 가. (생략)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u>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u></p> <p>4. (생략) 가. ~ 라. (생략)</p> <p>5. <u>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u> 가. ~ 다. (생략)</p>	<p>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u> -----</p> <p>2.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활용</u> <u>하는</u> ----- -----</p> <p>4.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p> <p>① <u>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p> <p>① --- <u>제7조제2항에 따라</u> ----- ----- --- <u>인정되는 지역을</u> ----- -----.</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p>	<p>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 관계법령에 따른 ----- 하는 경우 해당 -----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에 적합한지-----.</p> <p>② --- 제1항의 검토결과 ----- 인정되면 -----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 권고하거나 조언-----.</p>

현행	개정안
<p>③ <u>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u></p> <p>④ <u>군수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u></p> <p>⑤ <u>군수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④ ---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 ----- -----.</p> <p>⑤ ---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 ----- -----.</p>
<p>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u>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4. <u>기타</u>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1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 ----- 필요한 경우 -- 각 호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현행	개정안
<p>② <u>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u></p> <p>③ <u>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p>④ <u>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삭 제></p> <p>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단체-----</u> ----- <u>자연경관 보전활동-----</u> -----.</p> <p>④ ----- <u>자연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u> ----- <u>각 호--</u> ----- <u>그 지정-----</u> -----.</p>
<p>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p> <p>① <u>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2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p> <p>① --- <u>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u> <u>하거나 --- 범위-----</u> -----.</p> <p>② <u>제1항에 따른 -----</u>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u>자연경관심의위원회</u>를 둘 수 있다.</p> <p>② <u>자연경관심의위원회</u>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u>자연경관심의위원회</u>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④ <u>자연경관심의위원회</u>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신설></p>	<p>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 ----- <u>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② <u>위원회</u>--- <u>각호</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③ <u>위원회</u>--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u> -----.</p> <p>④ <u>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⑤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35
----------	-----------

제출연월일	2009. 9.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서북부경남 과실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하여 「FTA기금사업」으로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연합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 그 설치근거와 기능, 관리위탁, 운영방법 등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근거 등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으로 함(안 제3조).
- 다. 유통센터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등의 유통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지원, 농산물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함(안 제4조).
- 라. 유통센터는 군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할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유통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와 그 선정절차, 위탁 협약 및 취소, 위탁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기본적인 운영방법,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의무 및 책임, 휴·폐업 허가, 위탁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검사와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그 밖에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유통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의 범위, 위탁신청, 운영주체의 선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2009년 본예산에 355백만원 확보

(포장재비 202백만원, 선별비 153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7. 31 . ~ 2009. 8.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수집·선별·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주체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2명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자(3명 이내에 한한다)
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유통센터 위탁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6조(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0조(이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제21조(사업연도)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거창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및 비품관리대장
3.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4.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방법)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의 유지, 개·보수,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26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시설변경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반환) 운영주체는 위탁기간의 만료, 위탁의 취소,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9조(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 마케팅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 유통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 립 일 자				
취 급 품 목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법인등기부등본 1부</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휴 업 기 간			
	휴 업 사 유			
	휴업공시방법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폐업기간			
	폐업사유			
	폐업공시방법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